경기도 공고 제2025-476호

2025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5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지원대상**: 2022. 2. 26.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지원규모 : 22개 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

 ※ 총사업비의 70% 이내 도 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 □ 지원내용(요약):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제품혁신 :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 시제품 개발, 제작이 필수이며, 총사업비 50% 이상을 시제품 제작비에 반영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25.2월) ▼	· 「'25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시업」 공고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이하 경과원)	
사업신청 / 서류검토('25.3월) ▼	· 사업신청 ·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신청기업 경과원	
서류평가('25.3월)	·서류평가 : 재무상태, 고용증가 등	경과원	
▼ 발표평가(′25.4월)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평가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 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 법위반기업 조회('25.4월) ▼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법위반사항 조회	경기도	
원가분석('25.4~5월)	· 시제품 개발 등 해당 시 원가분석(생략 가능)	외부 전문기관	
▼ 과제선정('25.5월) _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경기도, 경과원	
▼ 수정 시업계획서 제출('25.5월) ▼	· 원기분석 결과 반영된 시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수정시업계획서, 견적서 등	주관기관(기업) ⇨ 경과원	
협약체결('25.5월)	· 선정기업(후보기업) 오라멘테이션,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과원	
▼ 사업비 지급('25.6월) ▼	· 협약에 따라도 자원금 지급 (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	경과원 ⇨ 주관기관(기업)	
진도점검('25.8월)	· 추진현황 점검(서면 또는 현장방문)	주관기관(기업) ⇔ 경과원 평가위원	
사업완료('25.11월) 및 최종점검/평가('25.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제출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최종평가)	주관기관(기업) ⇔ 경과원 평가위원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26.2월)	·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시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사업 완료한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주관기관(기업) ⇔ 경과원 경기도 ⇔ 주관기관(기업)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5.3.21.) 기준

□ 신청자격

유 형	자 격 조 건		
필 수 조 건 (①~⑤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③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④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선 택 조 건 (①~③중 1개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최근 년도(2023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지 원 제 외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2년~2024년) ② 2025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③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3.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 지원금액 및 내용 : 22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원)

구 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SW Licence	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소진) 원칙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28. 이내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 필수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道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75,000,000원 이내	32,150,000원 이상	107,150,000원
계산식	道지원금≤(총 사업비×0.7)	현금≥(총사업비×0.3)	-

[※] 기업부담금은 만원 단위에서 올림 적용(예시, 32,142,857원 ⇒ 32,150,000원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5. 2. 26. (수) ~ 3. 21. (금) 15:00까지
-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 ① 과제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회원가입(2인 필수)
 - 접수 시, 신청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
 - ②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 ③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5시 이후 접수 불가**
 -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 (모든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mark>공고일 이후</mark> 최신본으로 제출 요망) ※작성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빈칸이 없게 작성하며, 날짜, 직인, 서명 등 누락시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내 용			
	01_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붙임]]	 - (과제명) 30자 이내로 과제 핵심내용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 정보공개에도 적합해야 함. - (성과목표) 본 과제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 부여 등 - (정략적 목표 제시) 본 과제에 대한 개발사양 정량적 목표로 제시,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 성능인증 방법에 대한 기술적 자료 제시 등 - (차별성 비교 제시) 기존 유사 과제를 수행한 경우 본 과제와의 차별성에 관한 비교표를 통해 사업화 목표, 핵심 부품 사양, 기능 차별점 제시 등 			
	02_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u>www.gov.kr</u>),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03_공장등록증명서	- 정부24(www.gov.kr), 타지역 소재 사업자 필수 제출			
	04_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 정부24(<u>www.gov.kr</u>)			
	05_국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 정부24(www.gov.kr)			
	06_법인둥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필수	07_표준재무제표증명 (원) - 2021년, 2022년, 2023년 각1부	- 국세청(<u>www.hometax.go.kr</u>)			
	08_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3년, 2024년 각1부	- 국세청(www.hometax.go.kr) ※ 매월 신고 12월 또는 반기 신고 반기월 귀속연월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09_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2024년 1월 ~ 9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erti.kosha.or.kr) ※ 조회결과 재해율 표상 전체의 기업 대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차이 확인			
	10_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u>www.rnd.or.kr</u>) ※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11_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2]				
	12_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붙임3]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sobujang.net)			
	13_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4]				
	14_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				
	15_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붙임6]				
	16_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생산확인서 [붙임7]				
선택	17_대ㆍ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붙임8]				
	18_경기도 인중(확인)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경기도 일자라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신업단지 RELOO 참여기업			
	19_환경분야 인증	- 신기술(NET), 신제품(NEP),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 기술성능확인 등 환경분야 관련 각종 인증			
	20_가산점 해당 증빙서류	- 평가기준 참조			

- 구비서류 제출 시, 파일별 연번 부여하여 제출, (예) 01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5. 지원제한

-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 **접수 마감일(2025. 3. 21.)**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⑤ 휴 · 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⑨ 대기업·중견기업
- ①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2년~2024년)
- ② 2025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①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 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1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25.1.17)에 의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어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고용창출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
세부기준	-	3년간 CAGR ((23년도 매출액/ 21년도 매출액) ^(1/2)-1)×100	영업이익 /매출액×100 (23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23년도)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이 (24년도)	24년 상시근로자수 /23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1건당 1점
배 점	106점	30점	10점	20점	10점	30점	6점

- ※ 최근 3개년도(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소기업경영지표 제조업 평균지표 대비 등급 평가
- ※ 고용창출의 경우 최근 2개년도(2023년~2024년)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 ① 가산점은 건당 1점, 최대 6점으로 적용함
 -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공고일[2025.2.26.] 이후여야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①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30개) 생산기업 「붙임7」
- ②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www.sobujang.net)
- ③ 대ㆍ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제출기업 「붙임&」
- ④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착한기업 인증기업/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2022~2024 선정기업)
- ⑥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⑦ 환경관련 제품/품질/기업인증 보유기업
 -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등

□ 발표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 (차순위 기업 선정)

7. 기타 공지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 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과원의 요청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가입기간 별도 안내)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사업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필요시 법인카드(사업비 전용카드) 사용(필수)

□ 기업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신청일 이후, 사전 지원 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지원수혜자 제재사항

-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횡령 등)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

8. 문의처

전문기관 연락처		FAX	E-mail.	
GBSA 기업성장팀	031)259-6495	031)259-6504	auto1@gbsa.or.k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 [붙임]: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2.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3.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7.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생산확인서
 - 8. 대ㆍ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 9. 원가분석 세부시행 계산서
- [참고]: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 2. PMS 사업신청 매뉴얼 자료
 - 3. GMS 소개자료. 끝.